

2022년 1차

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

일시: 2022년 3월 30일(수) 16:00

장소: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

안건

1. 보고안건

1-1. 전차회의 보고

1-2.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보고

1-3.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
조례안 보고

2. 의결안건

2-1. 2022년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서

2-2.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취업규칙 개정

3. 기타안건



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

성원확인

번호	근거	이름	소속	직책	참석
1	민중의집	정경섭	민중의집	대표/운영위원장	
2		김태현	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	센터장	
3		정윤각	공인노무사	노무사	
4	마포지역	오상철	마포구 일자리지원과	과장	
5		홍진주	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	센터장	
6		윤성일	(사)마포공동체경제 모아	이사장	
7		박홍섭	(재)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	이사장	
8	노동전문가 및 노조	신태중	서울노동권익센터	정책연구팀장	
9		박진국	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	수석부지부장	
10		권정환	전국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	사무국장	

보고안건 1-1. 전차회의 보고

1. 개요

- 일시: 2021년 12월 22일(수) 14:00
- 장소: 청년문화공간
- 성원: 참석 6명 불참석 4명

2. 내용

1) 보고안건

1-1) 전차회의 보고

- 원안 보고

1-2) 2021년 상반기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 보고

- 원안 보고

1-3)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수탁 상황에 관한 보고

- 원안 보고

1-4) 2022년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 삭감 관련 상황에 관한 보고

- 원안 보고

1-5) 운영위원 사임에 관한 보고

- 원안 보고

보고안건 1-2.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

-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위수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(2022.12.08.)에서 보류 처리됨.

보고안전 1-3.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보고

1. 경과

- 2021년 6월 28일, 29일 마포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아파트경비노동자 교육에 150여명의 아파트경비노동자 참석, 아파트경비노동자 모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보호 조례 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함.
- 2021년 11월,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보호 조례 토론회 개최, 아파트경비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617명 서명 전달.
- 2021년 12월 20일 마포구의회 본회의에서 <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> 의결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(안 제3조~안 제4조)
- 다. 지원의 범위(안 제5조)
- 라.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(안 제6조)
- 마 교육 및 홍보(안 제7조)
- 바. 표창(안 제8조)

1. 사업개요

가. 목적

- 마포구 중소영세·비정규·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 노동권익 보호
- 마포구 장·단기 노동의제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
- 문화, 노동안전 및 건강 등 노동복지 증진
- 마포구 취약 노동자 조직화 지원
-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협력으로 노동존중 문화 확산

나. 주요사업계획

① 노동상담 및 인권캠페인

1)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

- 목적: 마포구 직장인, 주민 노동권익 보호 및 권익침해 예방
- 목표: 1,200건/1,200명/200회 상담
- 내용: 임금체불, 부당해고,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 상담
- 대상: 마포구 직장인, 주민, 청소년 및 서울시민 등
- 방식:
 - 전화·방문·홈페이지·찾아가는 상담 등 상담채널 다양화
 - 전문위원(공인노무사) 상시 상담체계 강화
 - 상담현수막, 웹자보 등 홍보
- 기간 : 2022. 1. 1 ~ 2022. 12. 31. (상시)

2) 노동인권캠페인

- 목적: 노동인권 증진과 인식 제고 및 센터 홍보
- 목표: 700명/700명/5회
- 내용
 - 캠페인, 홍보, 기념품 배포 등 노동인권 증진과 인식 제고
 - 일반 시민 및 사업주의 인식 개선 및 노동환경 개선
 - 관내 노동단체, 기관들과 홍보 협력 및 체계 구축
 - 주요 거점 및 지하철 역사 등 현장 캠페인
- 대상: 마포구 직장인, 주민, 청소년 및 서울시민 등
- 방식: 문화제, 거리공연, 커피나눔, 찾아가는 상담, 영화제 등
- 기간: 2022. 1. 1 ~ 2022. 12. 31. (5월, 11월 및 수시)

② 노동인권교육사업

1) 노동자·시민 노동인권교육

- 목적
 - 마포구 직장인, 주민 노동권익 보호 및 권리침해 예방
 -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협력토대 구축
- 목표 : 100명/100명/10회
- 내용
 - 시민노동법률학교 하반기 진행
 -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 발굴, 육성을 위한 기본과정 진행
 - 유관단체,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시기, 특성에 맞는 강좌 개설
- 대상
 - 마포구 직장인, 주민, 청소년 및 서울시민 등
 - 유관 단체, 노동조합, 협동조합, 사업체 등

- 방식: 대면강좌, 비대면강좌, 정기강좌, 특별강좌 등
- 기간: 2022. 1. 1 ~ 2022. 12. 31. (상시)
 - 시민노동법률학교 : 9,10월
 -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과정 : 4,5월
 - 프리랜서 세무강좌 : 4월

2) 청소년 노동교육

- 목적
 -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
 - 단위학교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
 -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 발굴, 육성
- 목표: 920명/920명/46학급
- 내용
 - 특성화고, 직업학교, 일반고 등 노동인권수업 진행
 - 서울시 강사단 협력 및 마포 활동가 발굴, 육성
 - 홍보물 또는 교육자료 제작, 배포
- 대상: 마포구 청소년 및 학교, 강사단 등
- 방식: 대면수업 / 비대면수업 / 동영상수업 / 캠페인 등
- 기간: 2022. 1. 1 ~ 2022. 12. 31. (상시)
 - 상반기: 특성화고, 직업학교
 - 하반기: 일반중·고교

③ 연구조사사업

1)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

- 목적: 지역내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·복지요구 등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정책 개발

- 목표: 250명 설문조사 및 집단인터뷰 4명(실인원 250명/총 1회)
- 내용: 연 1개 취약 업종 및 계층 노동자 실태
- 대상: 마포구내 취약노동자
- 방식: 현장 방문 실태조사(설문 및 면접조사)
- 기간: 2-3/4분기

2) 마포노동포럼

- 목적: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 노동·복지 정책 추진
- 목표: 45명(실인원 40명/총 3회)
- 내용: 년 3회 포럼 개최
- 대상: 마포구내 취약노동자, 노동시민단체, 전문가 등
- 방식: 온/오프 병행 토론회
- 기간: 연중

4] 노동문화사업

1) 문화예술 프로그램

- 목적: 노동자 문화예술 소양 증진 및 삶의 질 향상
- 목표: 연 4개 프로그램 (연인원 320명/실인원 80명/총 16회차)
- 내용: 노동자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
 - 문화예술 특강 <클래식 음악·명화 따라잡기>
 - 인문사회 특강 <노동으로 세상읽기>
 - 글쓰기, 독서 토론 프로그램 <내 마음이 글이 될 때>
 - 공동체 영화 상영 <방구석 말고 공동체 상영회>
 - 그림 수업, 사진 수업, 서예 교실, 영상 제작, 스마트폰 활용 등
- 대상: 마포구 취약노동자 및 노동자, 구직자
- 방식: 온라인, 오프라인 강좌 및 실습 프로그램

- 기간: 2022년 3월~12월

2) 건강지원 프로그램

- 목적: 취약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권 향상
- 목표: 연 4개 프로그램 (연인원 320명/실인원 80명/총 16회차)
- 내용: 노동자들의 몸, 마음 건강 지원 프로그램 정례화
 -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돌봄학교 <일건강학교>
 - 청소, 경비, 배달, 돌봄, 급식 등 취약노동자 맞춤형 산재 예방, 근골격계 예방, 요가·스트레칭 프로그램 수시 진행
 - 심리상담, 타로읽기 등 마음건강 지원사업
- 대상: 마포구 취약노동자 및 노동자, 구직자
- 방식: 온라인, 오프라인 강좌 및 실습 프로그램
- 기간: 2022년 3월~12월

⑤ 네트워크 및 조직화 지원사업

1) 노동네트워크

- 목적: 네트워크 확대 및 안정화를 통한 지역사회 노동인권 문화 확산
- 목표: 연인원 250명/실인원 250명/총 25회
- 내용: 각종 중간지원조직, 노동조합,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
- 대상: 각종 중간지원조직, 노동조합,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
- 방식: 협약식, 간담회, 각종 의제별 네트워크 참여 등
- 기간: 2022년 1월~12월

2) 조직화 지원사업

- 목적: 안정적 네트워크와 협업사업을 기반으로 취약노동자 조직화 확대
- 목표: 연인원 1,000명/실인원 1,000명/20회

- 내용: 취약노동자 소모임, 공제회 및 노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
- 대상: 마포구 경비, 청소, 방송, 배달, 요양 등 미조직 취약노동자
- 방식: 업종별 취미, 역량강화 소모임·동아리 지원, 공제회 결성 지원
- 기간: 2022년 3월~12월

6] 홍보 및 역량 강화사업

1) 홍보사업

- 목적: 센터활동 및 주요 노동이슈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홍보
- 목표: 3월~10월 매월 현수막 10장 게시/홈페이지 25,000명, 유튜브 10,000명, 페이스북 5,000명 유입/소식지 200부 배부
- 내용: 홈페이지, SNS, 지역신문, 현수막, 기타 홍보물 제작·배포
- 대상: 마포구 노동자, 주민
- 방식: 홈페이지, SNS,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 이용
- 기간: 2022년 1월~12월

2) 역량 강화 사업

- 목적: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
- 목표: 운영위원회, 정책자문위원회 1회, 역량강화교육 2회
- 내용: 직원 직무향상, 조직 성과 개선
- 대상: 운영위원회, 정책자문위원, 직원
- 방식: 대면/비대면 회의 및 교육, 워크숍
- 기간: 2022년 3월~12월

다. 시설현황

- 시설일반현황
 - 소재지: 서울시 마포구 매봉로 18 마포창업복지관 305호
 - 시설규모 :

면 적		용 도	비고
- 3층 사무실 (65m ²)	42m ²	• 사무실	
	23m ²	• 상담실 및 회의실	

○ 종사자의 직급별 직종별 현황(직급별 평균호봉, 및 연봉 표기)

이 름	직 위	담당 및 역할	경력·자격 / 호봉
김태현	대 표	센터사업총괄 및 대외협력	노동조합 활동가 / 20호봉
조영권	사무국장	총무, 회계, 기획, 시설 관리	노동단체 활동가 / 7호봉
정인철	노동인권팀장	노동상담 및 노동교육	노동조합 활동가 / 12호봉
오현아	문화협력팀장	노동문화사업, 네트워크	사회단체 활동가 / 11호봉

라. 사업의 필요성

○ 프리랜서·특수고용, 영세사업장 등 취약노동자 보호의 필요성

- 마포구에는 상암DMC의 방송작가, 방송스텝 등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, 홍대 중심의 음악인, 영세사업장의 음식숙박 노동자, 청년알바생, 고령의 경비 및 청소 노동자, 배달노동자,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취약노동자들이 많이 있음.
- 센터는 이미 상암동 방송비정규직 노동자, 아파트경비, 배달노동자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, 이들 취약노동자에 대한 사업을 더욱 본격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.

○ 늘어나는 노동자 보호조례와 노동관련 민관협력 거버넌스 요구

- 마포구는 구의원들에 의해 감정노동보호조례(2020.1), 청소년노동인권보호조례(2020.7)가 제정된 데 이어 작년에는 필수노동자보호조례 및 아파트경비노동자보호조례가 제정되었음.
- 이들 조례는 구청장의 임무로 각각의 노동자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, 가이드라인 제시, 실태조사, 관련 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음.

- 각종 보호조례에 의해 늘어나는 구청의 노동인권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구청과 본 센터 및 관련 노동계가 유기적 연계와 협력이 필요함. 즉, 노동관련 거버넌스와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함.

○ 노동자 자주적 조직화 지원 필요성

- 취약노동자 보호는 취약노동자 스스로가 자주적 조직(협회, 공제회, 소모임, 노조)들을 건설하고 자신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가능함.
- 아파트경비노동자, 배달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소모임, 협회, 공제회,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해야 함.

2. 세부사업계획

(단위 : 천원)

(1)사업 분류	(2)세부사 업명	(3)사업대상	(4)계 획		(5)사업 내용 (요약)	(6)기대효과
			목표(연인원, 실인원,건(회)수)	예 산		
노동상 담사업	노동상담	노동자, 주민	1,200명/1,200명/200건	24,120	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찾아가는 노동상담	취약노동자 권 익 보호
	노동인권 캠페인	노동자, 주민	700명/700명/5건	3,900	주요거점 홍보활동	노동인권 보호 및 의식 향상
노동인 권사업	노동교육	노동자, 주민	100명/100명/10건	4,800	노동법률학교 노동인권교육	노동인권 이해 증진
	청소년노 동교육	청소년	920명/920명/46건	11,178	청소년노동인권교육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 모임 운영	청 소년 노 동 인 권보호 및 향 상
정책개 발사업	연구조사	노동자, 주민	250명/250명/1건	3,100	노동실태조사 연구용역	노동정책 근거 수립
	마포노동 포럼	노동자, 주 민, 협력단체	45명/45명/3건	2,490	노동실태결과발표	노동정책 근거 수립
노동문 화사업	노동문화 사업	노동자, 주민	640명/160명/32건	11,500	노동자 문화예술/건강/ 인문 교육	노동자 문화생 활/건강 향상

네트워크사업	노동네트워크	노동자, 주민, 협력단체	250명/250명/25건	2,000	간담회, 업무협약	센터 활동 확대
	조직화지원사업	노동자, 주민, 협력단체	1,000명/1,000명/2건	2,000	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 배달노동자사업 상암DMC여성비정규직사업	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센터 활동 확대
홍보및역량강화사업	홍보사업	노동자, 주민	상시	5,193	온라인 홍보 홍보책자/현수막 제작	센터활동홍보
	역량강화사업	직원 등	30명/15명/4건	2,300	운영위원회/정책자문회의 직원교육/역량강화	센터운영안정

3. 세입·세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세 입							세 출						
관	항	목	2021년 도 예산(A)	2022년 도 예산(B)	증감(B-A)		관	항	목	2021년 도 예산(A)	2022년 도 예산(B)	증감(B-A)	
					금액	비율 (%)						금액	비율 (%)
노동복지증진	자치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	서울시경상보조금	362,916	314,983	-47,933	86.7	노동복지증진	자치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	서울시경상보조금	362,916	314,983	-47,933	86.7

가. 세입내역

(단위 : 천원)

관	항	목	2021년도 예산(A)	2021년도 예산(B)	증감(B-A)		산출내역
					금액	비율(%)	
근로자복지증진	자치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	서울시경상보조금	362,916	314,983	-47,933	86.7	

나. 세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관	항	목	2021년도 예산(A)	2022년도 예산(B)	증감(B-A)		산출내역
					금액	비율(%)	
인건비	인건비합계		211,127	228,192	17,065	108.1	
	급여	소계	181,188	195,294	14,106	107.8	
		기본급	151,269	162,251	10,982	107.2	○센터장(20호봉) 4,617,970원*12개월 ○팀장1 - (6호봉) 2,589,850원*1개월 - (7호봉) 2,698,140원*11개월 ○팀장2 - (11호봉/1월) 3,162,860원*1개월 - (12호봉/2~6월/육아기단축근무) 2,841,519원*5개월 - (12호봉/7~12월) 3,247,450원*6개월 ○팀장3 - (10호봉/1~2월) 3,041,030원*2개월 - (11호봉/3~12월) 3,162,860원*10개월
		가족수당	3,960	4,080	120	103.1	○센터장 40,000원*12월 ○팀장1 120,000원*12월 ○팀장2 120,000원*12월 ○팀장3 60,000원*12월
		정액급식비	6,110	6,240	130	102.1	○센터장 130,000원*12월 ○팀장1 130,000원*12월 ○팀장2 130,000원*12월 ○팀장3 130,000원*12월
		연장근무수당	8,041	9,057	1,016	112.6	○팀장1 - (6호봉) 219,954*1개월 - (7호봉) 227,726*11개월 ○팀장2 - (11호봉/1월) 264,365*1개월 - (12호봉/2~12월) 270,436*11개월 ○팀장3 - (10호봉/1~2월) 250,444*2개월 - (11호봉/3~12월) 259,188*10개월
		명절휴가비	11,728	13,666	1,938	116.5	○센터장 4,617,970원 ○팀장1 2,698,140원 ○팀장2 3,247,450원 ○팀장3 3,101,945원
	사용자부담금	소계	29,939	32,898	2,959	109.8	
		국민연금	5,249	5,938	689	113.1	○센터장 해당없음 ○팀장1 1,781,661원 ○팀장2 2,127,214원 ○팀장3 2,028,842원
		고용보	1,225	1,386	161	113.1	○센터장 해당없음

		험					○팀장1 415,721원 ○팀장2 496,350원 ○팀장3 473,396원
		건강보 험	5,896	6,743	847	114.3	○센터장 2,131,028원 ○팀장1 1,383,757원 ○팀장2 1,652,136원 ○팀장3 1,575,734원
		요양보 험	605	828	223	136.8	○센터장 261,477원 ○팀장1 169,787원 ○팀장2 202,717원 ○팀장3 193,343원
		산재보 험	1,867	1,559	-308	83.5	○센터장 490,382원 ○팀장1 321,471원 ○팀장2 382,134원 ○팀장3 364,864원
		퇴직적 립금	15,099	16,444	1,345	108.9	○센터장 5,172,801원 ○팀장1 3,391,039원 ○팀장2 4,030,951원 ○팀장3 3,848,781원
운영비	운영비합계		16,334	14,210	-2,124	86.9	
	운영비	사무관 리비	9,114	8,910	-204	97.7	○사무용품 600,000원 ○사무실 관리비 3,840,000원 ○사무기기 임대료 2,540,000원 ○수수료 1,330,000원 ○유지비 600,000원
		제세공 과금	1,780	1,780	0	100	○공공요금 70,000원 ○통신요금 1,710,000원
		기타운 영비	5,440	3,520	-1,920	64.7	○구독료및도서비 100,000원 ○다과비 1,200,000원 ○온라인화상프로그램 200,000원 ○교통비 2,020,000원
사업비	사업비합계		135,455	72,581	-62,874	53.6	
	노동상 담사업	소계	35,380	28,020	-7,360	79.1	
		노동상 담	28,110	24,120	-3,990	85.8	- 상담료 30,000원*4시간*200회 - 식비다과비 8,000원*5명*3회
		노동인 권캠페 인	7,270	3,900	-3,370	53.6	- 캠페인 700,000원*5회, 홍보비 병합 - 식다과비 8,000원*10명*5회
	노동실 태연구 조사사 업	소계	19,320	5,590	-13,730	28.9	
		연구조 사	14,000	3,100	-10,900	22.1	○단순인건비 1,000,000원 ○답례품비 1,250,000원 ○인터뷰비 250,000원

							○자료집 600,000원
		마포노동포럼	5,320	2,490	-2,830	46.8	○강사비 250,000원*3회=750,000원 ○토론비 100,000원*3명*3회=900,000원 ○홍보비 200,000원*3회=600,000원 ○식비.다과비 8,000원*10명*3회=240,000원
	노동인권사업	소계	29,780	15,978	-13,802	53.6	
		노동교육	10,800	4,800	-6,000	44.4	- 강사비 300,000원*10회 - 홍보비 200,000원*2회 - 대관비/기술비 150,000원*4회 - 식비.다과비 8,000원*10명*10회
		청소년노동교육	18,980	11,178	-7,802	58.9	- 강사비 225,000원*46학급 - 교구비 10,000원*46학급 - 식비.다과비 8,000*46명(학급)
	노동문화사업	노동문화사업	22,160	11,500	-10,660	51.8	○강사비 300,000원*32회= 9,600,000원 ○홍보비 200,000원*3회= 600,000원 ○대관비/기술비 200,000원*3회= 600,000원 ○식다과비 5,000원*20명*4회= 400,000원 ○교재교구비 3,000원*20명*5회= 300,000원
	노동네트워크사업	소계	11,000	4,000	-7,000	36.4	
		노동네트워크	2,000	2,000	0	100	○식비.다과비 8,000원*10명*25회
		조직화지원사업	9,000	2,000	-7,000	22.2	○취약노동자조직화지원(아파트경비노동자 등) 2,000,000원
	홍보 및 내부사업	소계	17,815	7,493	-10,322	42.1	
		홍보사업	14,415	5,193	-9,222	36.1	○현수막 22,000*80개=1,760,000원 ○인쇄비 3,155,000원 ○프로그램구입 278,000원
		역량강화사업	3,400	2,300	-1,100	67.6	○강사비 600,000원 ○회의비 1,200,000원(운영위원회 등) ○보험료 500,000원

의결안건 2-2.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취업규칙 개정

- 취지: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관련 휴일휴가 조항 일부개정(신설)
- 주요내용: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본인 또는 동거인이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 또는 재택근무를 부여함

〈취업규칙 제7장 노동조건 제2절 휴일휴가 일부개정안〉

제36조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) 센터는 감염병 확산으로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본인 또는 동거인이 격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의 지침으로 정한다.

1. 본인 감염 및 격리 시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
2. 동거인 감염 및 격리 시 격리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.

※ 참고1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※ 참고2. 서울노동권익센터 코로나19 방역 조치 지침

1. 확진자

- 정부 지침에 따라 PCR 검사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(격리기간 유급 공가)
- 격리 해제 시 건강 상태와 필수 업무 등에 따라 방역 주의기간(3일)은 부서장과 협의해 재택근무 가능: 격리 7일 +최대 3일 재택근무 가능

2. 확진자 동거인

- 확진자와 동일하게 7일간 격리 및 재택근무 실시
- 격리 해제 시 정부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